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05

발의연월일: 2022. 6. 3.

발 의 자:이종배·박성민·김예지

성일종 · 정우택 · 홍문표

조명희 • 이종성 • 서병수

류성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「국유재산법」 등의 법 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 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3항 중 "기업"을 "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학 및 연구소 등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세제 및 자금 지원) ①・	제26조(세제 및 자금 지원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③
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	
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	
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	
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<u>기업</u>	<u>기업,</u>
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	<u>대학 및 연구소 등</u>
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	